

# 문화재청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을 경력경쟁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비 고
문화재 감정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안전기준과	행안부 승인기간 '21년 12월
고건축·근대건축	전문임기제 나급	1명	근대문화재과	행안부 승인기간 '22년 12월

※ 전문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문화재 감정	○ 국외 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및 확인 ○ 국내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 등
고건축·근대건축	○ 사적(근대건축) 지정조사 업무 ○ 사적(근대건축) 보존·활용·현상변경·보수정비 자문 ○ 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등록조사 및 재평가 업무 ○ 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보존·활용·현상변경·보수정비 자문 ○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고택) 지정조사 업무 ○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고택) 보존·활용·현상변경·보수정비 자문 업무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문화재보호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4.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 문화재감정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및 확인</li> <li>○ 국내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li> <li>○ 문화재 여부 감정 및 검색방법 개선 연구</li> <li>○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제도 안내 및 홍보</li> <li>○ 유관기관 업무협조(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교육 등)</li> </ul>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li> <li>○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 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 능력</li> <li>○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 능력, 조정능력</li> </ul>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여부 감정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li> <li>○ 문화재 여부 감정에 필요한 교육 관련 전문지식</li> <li>○ 문화재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지식</li> <li>○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에 대한 이해도 등 관련 지식</li> </ul>
----------	---

응 시 자 격 요 건	<b>관련분야 : 문화재 감정</b>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9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관련경력]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문화재 감정업무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p> <p>[관련학과] 사학, 서지학, 고고학, 민속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p>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40개월, 개월별 차등우대)</li> <li>○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응시요건 충족 이후 학위, 학위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 서지학, 고고학, 민속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li> </ul> </li> </ul>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급수별 점수 차등 부여)</li> </ul>

### <공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 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e-mail)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소득금액증명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40개월, 개월별 차등우대)
  -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석사이상, 학위별 차등배점)
  -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 \* 가산배점비율

1급	2급	3급
3점	2점	1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석적에 한하여 인정)

○ 고건축·근대건축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근대건축) 지정조사 업무</li> <li>○ 사적(근대건축) 보존·활용·현상변경·보수정비 자문</li> <li>○ 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등록조사 및 재평가 업무</li> <li>○ 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보존·활용·현상변경·보수정비 자문</li> <li>○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고택) 지정조사 업무</li> <li>○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고택) 보존·활용·현상변경·보수정비 자문 업무</li> </ul>
-------------	--

<b>필요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li> <li>○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 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 능력</li> <li>○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조정능력</li> </ul>
-------------	---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마을 및 고택 등 고건축 관련 지식</li> <li>○ 근대건축 및 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li> <li>○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법률적 지식</li> <li>○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처리 등에 대한 이해도</li> </ul>
-------------	--

<b>응</b>	<b>관련분야 : 고건축·근대건축</b>
----------	------------------------

시 자 격 요 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9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관련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관련 계통의 학과          [관련경력]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연구소 등에서의 건축문화재(근대건축물 등) 문화재 조사연구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p>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40개월, 개월별 차등우대)</li> <li>○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응시요건 충족 이후 학위, 학위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li> </ul> </li> </ul>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급수별 점수 차등 부여)</li> </ul>	

### <공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 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e-mail)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소득금액증명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40개월, 개월별 차등우대)
  -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석사이상, 학위별 차등배점)
  -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 \* 가산배점비율

1급	2급	3급
3점	2점	1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석적에 한하여 인정)

**5.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 임용 예정일 2021.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문화재감정 : 채용일로부터 '21.12.31.
  - 고건축·근대건축 : 채용일로부터 '22.12.31.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구 분	2020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5,914	50,584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6.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에 따라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적극적 서류전형 진행(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3배수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4.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1.23.(월) ~ 12.4.(금)	'20.12.2.(수) ~ 12.4.(금)	'20. 12. 11.(금)	'20.12.14.(월) ~ 12.16.(수) 중 1일	'20. 12. 24.(금)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임용된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 응시원서 접수 : **등기 또는 직접제출**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0.12.2.(수) ~ 12.4.(금)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방문 접수 시에는 정부청사 출입등록을 위해 사전 연락 필수(☎ 042-481-4647)
  - ※ 점심시간(12:00~13:00) 및 휴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907호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직무 관련
    - 문화재감정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4)
    - 고건축·근대건축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85)
  - 채용 관련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042-481-4647)

### □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1만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아래의 경력 증빙서류 각 1부(총 3종)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또는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면접 전형시 제출하여야 함
    -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응시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학위증명서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42-481-4647)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함

##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

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지 제1호>


# 응시원서

본인은 문화재청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응시번호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문화재감정, 고건축·근대건축 중 선택)	성명	(한글)
응시자격 * 반드시 선택	6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 9년 이상 근무경력 학사 취득 후 6년 이상 근무경력 (관련분야)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경력 (관련분야)학사취득 후 4년 이상 근무경력		(한자)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1만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표 (문화재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월      일 문화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직급의 응시원서 작성
- ②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하나를 택하여야 함
- ③ 성 명 : 한글 및 한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 ④ 주 소 :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 ⑤ 복수국적 해당여부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한다. 아닐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⑥ 정부전자수입인지(1만원)로 제출 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자 기본서류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문화재감정 고건축근대건축 중 선택)	성명	생년월일
------	---------------------------------------	----	------

###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경력증명서 1부. (필수/선택) *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 우대요건은 선택	
8. 학위증명서 1부. (필수/선택) *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 우대요건은 선택	
9. 자격증 사본 1부.(선택)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미인정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 제3호>

##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b>담당자 기재</b>	응시 직급	전문임기제 나급(문화 재감정, 고건축·근 대건축 중 선택)	응시 자격 <b>*반드시 선택</b>	6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 9년 이상 근무경력 학사 취득 후 6년 이상 근 무경력 (관련분야)박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 (관련분야)석사 취득 후 2 년 이상 근무경력 (관련분야)학사취득 후 4년 이상 근무경력	성 명

나. 응시 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small>(부서)</small>  ○○○○ <small>(○○과)</small>	근무기간  16.1.1 ~ 17.12.5	직 위 <small>(직급)</small>  과장 <small>(4급)</small>	담당업무	근무 형태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국제통상학	학위취득(예정)일  '00.00.00	학위종류  국제통상학 석사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small>(부서)</small>  ○○○○	근무기간  16.1.1 ~ 17.12.5	직 위 <small>(직급)</small>  과장 <small>(4급)</small>	담당업무	근무 형태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국제통상학	학위 취득(예정)일  '00.00.00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석사		

라. 가산점				
한 국 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1**

③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통상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자격증】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가능

<별지 제4호>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 직무수행계획서

###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게 작성
- 분량은 총 3매 이내로 작성
-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 제6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 경력 · 자격 · 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 논문 · 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 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u> <u>인청(사무소)</u>	<u>공무원 채용</u> <u>관리</u> <u>(복수국적</u> <u>조회)</u>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u>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u> <u>따라 보유 후 파기)</u>
<u>개인정보(자격</u> <u>증·경력·학</u> <u>위) 확인기관</u>	<u>공무원 채용</u> <u>관리</u> <u>(자격확인)</u>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u>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u> <u>따라 보유 후 파기)</u>
<u>인사혁신처</u>	<u>공무원 시험</u> <u>응시자격 정지</u> <u>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제일, 처분청	<u>처분이 있는 날로부터</u> <u>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u> <u>보관)</u>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감염병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감염병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및 출입국관리소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출입국관리소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규정에 따른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